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월

배당소득증대세제 개요
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유형) 시장평균 배당성향·배당수익률의 120%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10%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• 2유형) 시장평균 배당성향·배당수익률의 50%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30%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
지원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(원천징수대상자) 세율 14%▶9% •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 세율 최대 38%▶25%
시행시기	2015년 1월부터 3년간 한시 적용

※ 기획재정부

화

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

증여받는 사람	공제한도(10년간 합산 한도)
배우자	6억원
직계존속	5000만원
직계비속	5000만원(미성년 2000만원)
6촌 이내 혈족·4촌 이내 인척	1000만원

※ 국세청



양도소득세 요약표

양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,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함 *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			
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, 화장실,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,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			
양도차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			
장기보유 특별공제	1세대 1주택 이외 토지·건물	1세대 1주택(공제율 : 보유기간 + 거주기간)		
		보유기간	거주기간	
	3년 이상~15년 이상 6%~30%	3년 이상~10년 이상 12%~40%	3년 이상*~10년 이상 12%~40%	
	*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% 적용			
과세표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=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 			
세율	<기본 세율>			
	과세표준	기본세율	누진공제액	
	1,400만원 이하	6%	-	
	5,000만원 이하	15%	126만원	
	8,800만원 이하	24%	576만원	
	1.5억원 이하	35%	1,544만원	
	3억원 이하	38%	1,994만원	
	5억원 이하	40%	2,594만원	
	10억원 이하	42%	3,594만원	
10억원 초과	45%	6,594만원		
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	구분	세율		
		'21.5.31.까지	'21.6.1.이후	
	2주택자	기본세율+10%	기본세율+20%	
	3주택 이상자	기본세율+20%	기본세율+30%	
	분양권	50%	1년 미만 : 70% 1년 이상 : 60% (조정대상지역 내·외 구분없음)	
	주택보유 기간별	1년 미만 보유 주택·조합원입주권	40%	70%
		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·조합원입주권	기본세율	60%
2년 이상 주택·조합원입주권		기본세율	기본세율	
미등기 양도주택		70%	70%	
* <중과한시 배제>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'22.5.10.-'25.5.9. 기간 중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				